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제정 2018. 1. 15.】

【일부개정 2018. 2.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단규의 체계와 그 제정·개폐,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단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규”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업무·운영 등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규범 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정”이란 공단의 기본조직과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의무, 제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을 체계화하여 공단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내규”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단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4. “예규”란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내규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제4조(체계) 단규는 정관, 규정, 내규 및 예규로 나눈다.<개정 2018. 2. 14.>

제5조(단규의 명칭) 단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는 그렇지 않다.

제6조(제정형식) ① 단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
2. 목적
3. 적용범위
4. 정의
5. 각 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단규를 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단규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 다음에 “제10조의2” 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4.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5. 외래어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제2장 제정 및 개폐

제7조(입안) ① 단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당해 안건의 주무팀(이하 “입안팀”라 한다)이 입안하여 단규 담당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다른 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단규 담당팀은 단규 중 개정 또는 보완사항과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안팀에 그 입안을 요청하거나 협의 후 직접 단규안을 입안할 수 있다.

제8조(심의) ①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단규안은 단규 담당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단규 담당팀은 입안팀에서 제출된 단규안을 관련 법규, 단규의 체계 및 관련 규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수정하거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절차) ① 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공단 정관 제2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되 공단 정관 부칙 제4조제2항에 정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2. 내규 및 예규는 이사장의 결재로 제정, 개폐한다.

② 단규 담당팀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 내규 및 예규를 규정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내(예)규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효력) ① 법령, 조례,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단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단규는 정관, 규정, 내규, 예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동일 순위의 단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단규가 일반단규에 우선하며, 동일 특별단규나 일반단규 간에는 신 단규가 구 단규에 우선한다.

제11조(효력발생시기) 단규는 그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공포방법) 정관, 규정 및 내규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정보통신망(공단 또는 시 홈페이지) 게재로 공포한다. 다만, 예규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로 같음한다.

제13조(공포일) 정관, 규정 및 내규의 공포일은 그 정관, 규정 및 내규를 게재한 시 공보가 발행된 날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로 한다.

제3장 관리

제14조(시행) ① 제정 또는 개폐된 단규는 이사장의 명의로 공포 시행한다.

② 시행하는 규정 및 내규, 예규는 각각 일련(누년)번호를 쓰며 규정 대장 및 내규, 예규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운용관리) ① 규정 및 내규, 예규의 원본은 단규 담당팀이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단규를 편집 발간한다.

② 단규집은 제4조에 따라 분류된 체계대로 편철하고 추록을 배포 가제하여 관리한다.

제16조(규정의 해석) 단규의 집행상·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경영지원팀장에 그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주재 하에 관계부서장이 협의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제17조(단규내용의 주지) ① 각 팀장은 소속직원에게 단규 시행문을 반드시 공람토록 하고 단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직원은 단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2.14.)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규안 작성요령(제7조제1항 관련)

1. 제정의 경우

[예시]

- 규정·내규안
- 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규정·내규
- 〈단규 내용 기재〉

2. 전부 개정의 경우

[예시]

- 규정·내규 전부 개정규정·내규안
- 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정·내규
- 〈단규 내용 기재〉

3. 일부 개정의 경우

[예시]

- 규정·내규 일부 개정규정·내규안
- 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해당 개정 내용 기재〉

4. 개정내용 작성 요령

가. 단규명의 개정 요령

- 1) 단규명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단규명 중 “---”을 “---”으로 한다.
- 2) 단규명 중 전부 개정하고자 할 경우
[예] 단규명 “---”을 “---”으로 한다.

나. 조, 항, 호를 일부 개정하는 요령

1) 주의사항

가) 개정, 삭제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장소를 명확히 지정

나) 인용부호(“ ”)로 개정될 자구를 인용할 때에는 간략한 표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앞뒤 자구를 아울러 인용

다) 하나의 조, 항, 호 중 여러 곳을 개정,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 규정이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 항, 호의 전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2) 기존의 조, 항, 호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을 “----”로 한다.

3) 기존의 조, 항, 호 중의 일부를 연결하여 개정할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을 “----”로 하고, “----”을 “----”로 하며, “----”을 “----”로 한다.

※ 제○조의 제A항과 제B항에 개정할 부분이 있어 이를 연결하여 개정할 때

[예] 제○조 제A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B항 중 “----”을 “----”로 한다.

4) 제명을 개정할 경우

[예] 제명 “----”을 “----”로 한다.

5)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 “(----)”을 “(----)”로 한다.

6) 기존의 조, 항, 호의 자구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할 경우

가)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 다음에(또는 앞에) “----”을 삽입한다.

나)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 다음에 “----”을 추가한다.

다. 조, 항, 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추가하는 요령

[예1] 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그러나), ----

[예2]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라. 조, 항, 호를 전부 개정하는 요령

1)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2) 항의 경우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3) 호의 경우

제○조제○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 전부 개정되는 항, 호의 수가 많을 때

[예1] 제○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예2] 제○조(제○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조, 항, 호를 추가하는 요령

1) 말미에 추가할 경우

가)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 -----

나) 항의 경우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 호의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2) 기존의 조, 항, 호 사이에 추가할 경우의 일반적 유의사항

가)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 항, 호들을 순차적으로 뒤로 끌어 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삽입하여 추가

나) 이동되는 조, 항, 호 중 제일 끝의 조문부터 이동

다) 끌어올리거나 내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할 경우에는 가지조, 호(제○조의2,의2)를 사용

3) 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고 조를 추가하는 경우

〈본칙 10조로 이루어진 규정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가)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와 제10조를 추가할 경우

[예1]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제10조 -----

[예2]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나)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추가하는 경우

[예]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11조 -----

4) 기존의 항(호)을 끌어내리고 2개항(호)을 추가하는 경우

〈3개항(호)으로 이루어진 조를 예로 함〉

[예] 제○조제3항(호)을 제5항(9호)으로 하고, 같은 조(항)에 제3항(호) 및 제4항(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호의 경우 : 3. ---)

④----- (호의 경우 : 4. ---)

5)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가) 제○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

제○조의3 -----

나) 제1조(호) 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예] 제1조(호)를 제1조(호)의2로 하고, 제1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호의 경우 : 1. -----)

바. 조, 항, 호 또는 단서 등을 폐지하는 요령

[예1] 제○조(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예2] 제○조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사. 조, 항, 호의 복합적 개정 요령

1) 어느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

<제2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것을 예로 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

제2조의3 -----

2) 조문 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 전의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경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중전의 제5조)중 "A"를 "B"로 한다.

3)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4) 3개항으로 이루어진 2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제2항의 항 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은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3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5)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부 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이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현행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③-----

④-----

6) 제○조가 5개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부 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 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7) 어느 조, 항의 각호를 전부 개정하면서 각호의 순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

<5개호를 3개호를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예] 제○조(제○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8) 조, 항 중 어느 항(호)을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예] 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9) 어느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5항을 한 항씩 끌어올리는 경우

[예] 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아. 장, 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 요령

1) 장, 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요령

가) 장, 절 등의 제목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을 “---”로 한다.

나) 장(절) 제목의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2) 장, 절 등을 추가하는 요령

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제○조 -----

.

.

.

제○조 -----

3) 장, 절 등을 전부 개정하는 요령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

제50조 -----

.

.

.

제58조 -----

자. 표의 개정 요령

1) 별표의 일부 개정 요령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별표를 예로 함〉

[별표 1]

제 목	기 호	내 용
종합체육시설관리	100	0000 사용허가 관리사항

가) 종합체육시설관리의 전부 개정할 경우
 별표 1 중 종합체육시설관리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체육시설관리	-----	-----
----------	-------	-------

나) 종합체육시설관리란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
 별표 1의 종합체육시설관리란 중 “---”을 “---”로 한다.

다) [별표 1] 을 전부 개정할 경우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종합체육시설관리란을 삭제할 경우
 별표 1 중 종합체육시설관리란을 삭제한다.

2) 별표를 전부 개정하여 2개의 별표로 하는 경우의 개정 요령
 [별표] 를 [별표 1] 로 하여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 ○ ○

[별표 2] 를 다음과(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 ○ ○

3) 2개의 별표를 개정하여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는 경우의 개정 방식

[별표 2] 를 삭제하고, [별표 1] 을 [별표] 로 하여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 ○ ○

차. 폐지의 경우

1) 부칙에서 폐지하는 요령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2) 폐지를 위한 규정·내규를 제정하는 요령

○○○ 규정·내규폐지규정·내규안

○○○ 규정·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카. 부칙

부 칙

이 규정·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타. 신구조문 대비표의 경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조(○○○) ① ---- ② ----	제○조(○○○) ① ----	
〈신 설〉 제○조(○○○) ----	제○조(○○○) ---- 〈삭 제〉	

- [주] 1. 제정 및 전부 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개정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대비를 명백히 하여야 함.
3. 비교란에는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함.

[별지 제1호 서식]

단규 제정(개정) 계획

제안일자 :

제안자 :

1. 제정(개정) 이유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 내용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가.

나.

3. 참고 사항

가. 제안 근거

나. 예산 조치

다. 합의

라. 그 밖의 참고사항

